



# SmartWhistle

## 윤리경영 Newsletter 2016년 9월호

### 1. 최근 동향 및 소식

- 금감원, 자금세탁방지 검사...모건스탠리 등 4개사 제재
- 준법감시협의회, 준법경영 위한 토론회 개최
- 조달청, 청탁금지법 관련 청렴 공직문화 특강
- GKL, 강남구청 등 3개 기관과 반부패·청렴실천 협약
- IITP, 반부패 청렴의식 주간 행사 실시

### 2. 윤리경영 실천 사례

- POSCO 윤리경영 실천 프로그램

### 3. 청렴 위반 사례

- 처분 감경 부정 청탁
- 1회의 의미 관련 사례

### 4. 지식마당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Part1

### 5. Quiz

### 6. 관련 행사 및 독자 의견



## 최근 동향 및 소식

### 1. 금감원, 자금세탁방지 검사...모건스탠리 등 4개사 제재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모건스탠리인터내셔널증권(이하 모건스탠리) 서울지점 등 4개 증권사에 대해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고객확인 업무 미흡 등의 이유로 개선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모건스탠리가 환전상 등 고위험군으로 고려해야 하는 업종군에 대한 분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일부 고위험 고객의 경우 자금의 원천과 거래의 목적 등이 추가로 확인돼야 하는데 분류가 안 되면서 누락되는 사례가 빚어졌다. 모건스탠리는 또 특정 기간 의심스러운 거래가 나왔음에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SG증권 역시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에 대한 보고 업무를 소홀히 해 개선 명령을 받았다. 주요 인물과 거래할 때 준법감시인의 승인만으로 거래 관계가 가능하게 돼 있는 등 내부통제 업무도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내증권사에서는 토러스투자증권과 한화투자증권이 금감원의 제재대상이 됐다. 토러스투자증권은 고객확인 업무 미흡과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미흡, 내부통제 업무 미흡 등으로 3건의 개선 조치를 받았으며, 한화투자증권은 은행 연계계좌 고객에 대한 확인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6월 해당 증권사를 대상으로 자금세탁 방지 관련 검사를 진행했고 내부통제 시스템 등이 미흡한 점에 대해서 지적한 것"이라며 "검사 대상 기관은 금감원 자체적인 상시감시와 함께 FIU의 위험평가 점수 등을 토대로 결정된다"고 말했다.

<http://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5009>

### 2. 준법감시협의회, 준법경영 위한 토론회 개최

60개 증권·선물회사의 준법감시인으로 구성된 준법감시협의회는 여의도 한국거래소 사옥에서 '준법경영 확립 및 위법성 영업 관행 근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토론회는 내부통제 제도 개선 등 준법경영 확립 방안과 업계 내부의 위법성 영업 관행 근절을 위한 모범 실무 사례(Best Practice)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병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 준법감시인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시연 한국금융연구원 박사는 '금융회사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준법경영 확립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임직원의 자율적 준법 의지 조성은 최고경영자(CEO)의 의지와 실천에 따라 좌우된다"며 "내부통제 개념과 대표이사 및 이사회 책임의 지배구조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 삼성증권 이학기 상무는 불건전거래 의심사례에 대한 알람(경보) 기능과 금융사고 개연성이 있는 시나리오를 적출하는 기능을 탑재한 불건전거래 예방시스템을 소개했다.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사장은 "경영전략 차원에서 임직원의 준법의식 확립을 위해 인적·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082313475754234>

## 최근 동향 및 소식

### 3. 조달청, 청탁금지법 관련 청렴 공직문화 특강

조달청은 31일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정양호 조달청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청탁금지법의 이해와 실천과제’를 주제로 한 청렴특강을 실시했다.



이날 특강에는 김덕만 청렴윤리연구원장이 강연자로 나서 오는 9월28일 시행을 앞둔 청탁금지법의 제정 배경과 의의, 적용 범위 등을 설명했다.

김 원장은 특히 입낙찰과 계약 등 조달업무와 관련 구체적인 사례교육을 통해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인식전환을 강조했다.

정양호 청장도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공직사회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며 “이번 교육으로 공직자 스스로의 청렴의식 향상은 물론 투명한 공직문화 정착에 도움이 되길 기대된다”고 밝혔다.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608311124066970736>

### 4. GKL, 강남구청 등 3개 기관과 반부패·청렴실천 협약

그랜드코리아레저(GKL)는 29일 강남구청에서 강남구, 강남교육지원청, 강남구상공회 등 3개 기관과 반부패·청렴실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앞으로 4개 기관은 기관간의 협약체결 이행을 위한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역 내 청렴 관련 행사 개최 등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함께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이기우 GKL 사장은 “경쟁환경에서 기업의 윤리경영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투명하고 신뢰받는 기업만이 살아남는 시대가 되었다”며 “GKL은 3개 기관과 힘을 모아 청렴문화 확산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ttp://news1.kr/articles/?2759989>

### 5. IITP, 반부패 청렴의식 주간 행사 실시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는 반부패·청렴의식 고취를 통한 청렴한 조직문화를 위해 8월 29일부터 9월 2일까지를 '반부패·청렴주간'으로 설정하고 전직원 대상으로 청렴서약식과 교육 등을 시행한다.

29일에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청렴서약식과 청렴교육이 진행된다. 30일에는 기관장과 경영진을 대상으로 대전교도소가 주관하는 전문 현장교육을 통해 비위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9월 1일에는 청탁금지법 등 윤리경영 관련 이슈 논의를 위한 청렴포럼 워크숍을 개최하고, 2일에는 다산 정약용 생가를 방문해 청렴현장 체험과 환경보호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이상홍 IITP 센터장은 "공정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통해 반부패·청렴주간 행사 등 지속적인 윤리경영 활동을 통해 고객에게 더욱 신뢰받는 IITP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6082602109960753001](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6082602109960753001)

## 윤리경영 실천 사례

### POSCO 윤리경영 실천 프로그램

#### [ 기업윤리 교육활동 ]

포스코는 윤리경영의 정착을 위해서는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교육을 통한 윤리적 가치관의 정립이 선결 요건이라고 보고, 끊임없이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2003년 윤리규범 선포 이후 3년이 경과한 2006년 이후부터는 구성원의 비윤리행위를 예방하는 것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의사결정 과정, 이해관계자와의 업무과정 등 모든 기업활동을 기업윤리에 부합하도록 추진하기 위해 윤리교육을 업무와 직급 별로 세분화하여 전략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1. 임원 대상의 '임원과 함께하는 윤리교육' 과정 (2007년 신설)

포스코 감사위원회에서는 2007년 1월 윤리사무국에서 임원들을 교육하기가 쉽지 않다고 보고 임원들이 스스로 공부하여 윤리적 지식과 소양을 갖춘 후 소속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에 윤리사무국에서는 본 과정을 '임원과 함께하는 윤리교육'이라 정하고 안내하여 2007년 6월부터 출자사를 포함한 전 임원이 참여하고 있다.



#### 2. 윤리적 리더십을 위한 '직책보임자 대상 윤리교육'

포스코는 윤리경영의 정착을 위해서는 직책보임자의 솔선수범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리더십스쿨 과정을 통해 임원, 부실장과 팀리더, 과·공장장, 주임·반장계층에 대해서 매년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리더십스쿨 교육과정은 사례를 통해 개개인이 올바른 의사결정과 역할을 수행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매년 교육생들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연극, 딜레마 사례 퀴즈, 동영상, 온라인 테스트 등 다양한 방법을 개발하고 있다.

또한, 조업과 구매, 외주 부문에서 일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부서 방문 윤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3. 전 직원 필수과정, 'E러닝 윤리교육'

포스코는 전 직원대상으로 e러닝 교육을 인당 연간 20시간 범위 내에서 실시하고 있다. e러닝 교육내용은 'Fresh & Fun' 테마로 매년 내용을 새롭게 하여 직원들이 기업윤리에 대해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다.

매년 e-러닝 교육은 '윤리경영에 대한 일반개념('04년)', '윤리규범에 대한 사례학습('05년)', '실천지침에 대한 심층학습('06년)', '작은 실천으로 완성하는 포스코 기업윤리('07년)', '포스코 패밀리의 글로벌 윤리경영('12년)' 등 단계별로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 윤리경영 실천 사례

### 4. 이해관계자와 함께 하는 윤리교육

포스코는 윤리경영의 성공은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보고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윤리규범 선포 초기에는 CEO가 직접 고객사·공급사·외주파트너사 등 주요 이해관계자에게 서한을 보내 윤리실천의 동참과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또한 주요 이해관계자 대표들을 대상으로 포항·광양·서울 지역별로 신규거래사 기업윤리 설명회, 고객사 경영진 기업윤리 워크숍, 자재공급사 윤리설명회 등의 설명회를 개최하여 포스코의 윤리경영 추진현황을 적극 알리고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이해관계자들이 준수해야 할 윤리실천 내용들을 설명하고 협조와 동참을 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경련, 윤경포럼, 국가청렴위원회 등 기업윤리 관련 제단체나 타사에 '포스코의 윤리경영 사례'를 전파하는 활동을 통해 윤리경영 선도기업으로서의 역할에도 힘쓰고 있다.

### 5. 해외법인 윤리교육 및 코칭

점차 확대되는 글로벌 비즈니스에 따라 포스코는 해외법인 현지방문을 통해 주재원과 현채인 대상으로 윤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주재원에게는 해외법인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글로벌 스탠더드 등 관련사례를 교육하고, 현채인들에게는 각국의 문화와 수준에 맞는 윤리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포스코는 해외 비즈니스에 적용하는 윤리실천 특별약관을 마련하고, 시행 중에 있다.

해외 윤리실천 특별약관에는 국내외 부패방지 법률 준수 등 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 방지 의무, 포스코와 거래상대방 상호간 윤리규범 준수 의무, 비윤리행위 유형 및 발생 시 제재기준·면책기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해외 윤리실천 특별약관은 지난 2004년부터 국내 비즈니스에서 적용해오던 '윤리실천 특별약관'을 해외 현지국의 법규와 문화를 고려해 보완작업을 거쳐 시행하는 것으로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도 판매와 구매, 외주 등 모든 거래계약에서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의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윤리 리스크(risk)가 예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윤리경영! 그 길을 묻다”, 2013, 국민권익위원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포스코 홈페이지 <http://www.posco.co.kr>

## 청렴 위반 사례

### 1 처분 감경 부정청탁

○○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B는 자신의 친한 친구인 의사 A가 「의료법」 위반으로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음. 고위공무원 B는 □□ 중앙부처 의료자원정책과장 C에게 감경 사유가 없지만 의사 A에 대한 처분을 감경해 줄 것을 의사 A 몰래 부탁한 경우

시사점 :

- ① 의료법상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관련 직무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
- ② 의료법령상 감경 사유가 없음에도 법령을 위반하여 감경·면제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
- ③ 고위공무원 B는 의사 A의 부탁이 없었지만 제3자 A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고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공직자등에 해당하므로 제재가 가중되어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  
- 의사 A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제재 대상이 아님
- ④ 담당과장 C가 고위공무원 B로부터 처음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징계 및 벌칙 대상에서 제외
- ⑤ 반면, 담당 과장 C가 고위공무원 B의 부정청탁에 따라 처분을 감경해 준 경우 형사처벌 대상(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2 1회의 의미 관련 사례

◇◇ 공공기관 과장 A와 해당 공공기관 서울 소재 사무소장 B는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 회계법인의 대표 C와 함께 식사를 한 후 대표 C가 식사비용 60만원을 계산하였고, 같은 날 A, B는 대표 C와 함께 술을 마시고 대표 C가 술값으로 300만원을 계산하였음

시사점 :

- ① 음식물·주류 등의 접대·향응을 받은 경우 실제 접대에 소요된 비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  
- 하지만 각자의 소요비용을 명확히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평등하게 분할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② 공공기관 직원인 A와 B가 회계법인 대표 C로부터 각각 받은 비용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평등하게 분할하여 각각 120만원(식사비용 60만원/3명 + 술값 300만원/3명) 상당의 접대를 받았음  
- 공공기관 직원인 A와 B는 120만원 상당의 접대를 각각 받았으므로 모두 형사처벌 대상 기준인 100만원을 초과하였음
- ③ 공공기관 직원 A와 B가 직무관련자인 대표 C로부터 같은 날 저녁에 연속하여 받은 식사, 술 등의 접대를 1회로 평가 가능한지의 문제  
- 공공기관 직원 A와 B가 □□ 회계법인 대표로부터 접대받은 식사 및 술은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이 있으므로 1회로 평가 가능
- ④ 또한, 제공자인 □□ 회계법인의 대표 C도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제공하였으므로 형사처벌 대상  
- 대표인 C가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으므로 양벌규정에 따라 □□ 회계법인도 형사처벌(벌금) 대상

## 지식마당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김영란법) Part1

‘김영란법’이란 공직자가 100만 원을 초과한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으면 형사 처분하는 법률로,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은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한 법안에 의해 산정되었다 해 ‘김영란법’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하지만 이 법률의 정확한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며, 약칭은 ‘청탁금지법’이다.

청탁금지법은 적용 범위가 광범위하고, 기존 법령과는 다르게 직무관련성·대가성 여부에 상관없이 부정한 청탁이나 고액(1회 100만 원, 연 300만 원)의 금품·향응을 받는 것 자체를 금지하자는 것으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가 크고, 법률 해석이 모호하여 과거 수년간 수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스마트위슬 윤리경영 뉴스레터에서는 앞으로 총 5회에 걸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풀어보 고자 한다.

#### 1. 제정 배경

##### 1) 헌법적 가치의 실현

-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서 부정부패 없는 투명하고 청렴한 대한민국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의지를 표출

- '02년 「부패방지법」이 시행된 이래 지난 10년간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다양한 부문에서 부패방지 활동을 전개
- 청탁금지법도 부패방지 정책 시행의 일환으로 우리 사회의 폐습으로 작용하는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관행의 근절을 위한 배경하에 추진

#### 2)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

- 국민권익위원회를 비롯한 정부의 부패방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의 부패·비리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
- 공직사회의 부패 실태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과 공직자의 인식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
  - '15년도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 공무원의 3.4%만이 공직사회가 부패 하다고 응답한 반면, 일반 국민의 57.8%가 공직사회가 부패 하다고 응답

#### 3) 국제사회의 대외 신인도 향상

-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이나 국가 경쟁력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부패 인식 수준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는 상당히 저평가된 상태
- '15년 국제투명성기구(TI)의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CPI)는 100점 만점에 56점, 168개국 중 37위로 저조



## 지식마당

- 홍콩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PERC, Political & Economical Risk Consultancy)의 '16년 아시아 부패지수에 따르면, 한국의 부패지수는 전년에 비해 소폭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다른 아시아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

### 4) 비윤리-합법적인 부패 영역의 축소

- 청탁금지법은 비윤리적이지만 합법적인 부패 영역을 축소시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산물
- 부패의 개념은 사회의 문화적 배경, 시간과 공간에 따라 다르게 인식되어 왔음

### 5) 기존 부패행위 통제의 사각지대 보완

- 공직자의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의 상승 및 부패행위에 대한 판단기준의 변화
- 다양화·은밀화·고도화된 새로운 유형의 부패행위에 대한 기존 반부패 법령의 규제 사각지대 보완 필요

구분	기존 법체계의 한계점	청탁금지법의 보완사항
형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무관련성, 대가성 입증 곤란 시 뇌물죄로 처벌 불가능</li> <li>▪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개별 법률에서</li> <li>▪ 공무원으로 의제 시에만 처벌</li> <li>▪ 수뢰죄 등 전통적 부패만 규제, 새로운 부패 규제 곤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무관련성, 대가성이 없어도 형벌, 과태료 등으로 제재</li> <li>▪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사 임직원까지 적용</li> <li>▪ 금품등과 결부되지 아니한 부정청탁행위 그 자체도 규제</li> </ul>
공직자 윤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령과 달리 재산신고, 퇴직자 취업제한만 규율</li> <li>▪ 적용 대상을 원칙상 재산등록의무자(4급 이상)로 한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에 관한 통제장치를 법제화</li> <li>▪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사 임직원까지 적용</li> </ul>

구분	기존 법체계의 한계점	청탁금지법의 보완사항
공무원 행동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통령령으로 형벌, 과태료 등 벌칙조항 신설 불가능</li> <li>▪ 임의적 징계로 실효성 확보 곤란</li> <li>▪ 헌법기관은 자체 규칙으로 위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형벌, 과태료 규정 신설</li> <li>▪ 필요적 징계로 강화</li> <li>▪ 모든 공공기관 적용 의무화</li> </ul>
부패방지 권익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권익위 설치·운영, 부패 신고 등 절차적인 사항 중심으로 규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지의무 부과 및 제재를 통한 부패방지 실제법으로 기능</li> </ul>

## 2. 제정 의의

### 1)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

- 청탁금지법은 부패 빈발 분야의 부정청탁행위를 제재하고 청탁 방지를 통해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
-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행위를 직무관련성·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여 국민의 신뢰를 확보

### 2) 공직자·공적 업무종사자의 보호

-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신고 등 절차를 따를 경우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책임으로부터 선량한 공직자등을 보호
- 청탁금지법은 선의의 공직자등을 보호하기 위해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사실을 알았을 때 신고·반환한 공직자등을 면책

출처 : 조선일보 <http://www.chosun.com/index.html>

국민권익위원회



## Quiz

- 다음 중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은?
  - 형법
  - 공직자윤리법
  - 공무원행동강령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배경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헌법적 가치의 실현
  - 국제사회의 대외 신인도 향상
  - 합법적인 부패활동의 영역 정의
  - 기존 부패행위 통제의 사각지대 보완
- 다음 중 청탁금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연간 금품·향응 제한 금액은?
  - 100만원
  - 300만원
  - 500만원
  - 1000만원
- 다음 중 청탁금지법에서 공무원행동강령의 한계점을 보완한 사항은?
  - 대통령령으로 형벌, 과태료 등 법칙조항 신설 불가능
  - 임의적 징계로 실효성 확보 곤란
  - 헌법기관은 자체 규칙으로 위임
  - 모든 공공기관 적용 의무화

## 과월호 Quiz 정답 및 해설

- 답 ③ 사회공헌의 성공조건은 SPIRIT(Social Investment, Positioning, Integration, Review, Involvement, Transparency)이다.
- 답 ② 한국수자원공사는 사회공헌활동으로 생수 유료화 사업을 시행하지 않았다.
- 답 ④ 경품으로 당첨된 카메라를 공용품으로 등록하는 행위는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 답 ① 포스코에너지의 윤리규범선포식에서는 윤리규범 위반행위의 처벌이 진행되지 않았다.

## 관련 행사

### 1. 권익위, 9~11월 석달 동안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 접수

국민권익위원회는 9월 1일부터 11월30일까지 3개월간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를 접수한다고 31일 밝혔다.

정부보조금은 국가가 특정 산업 육성이나 시책 장려 등을 위해 공공·민간영역에 지급하는 각종 지원금을 말하며, 집중 신고 대상은 연구개발(R&D) 지원, 어린이집 보조금, 요양급여, 복지시설 지원, 실업급여 등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집중 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이 근절되고 국민이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831\\_0014357840&cID=10301&pID=10300](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831_0014357840&cID=10301&pID=10300)

### 2. 법무법인 광장, 김영란법 관련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광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고객 초청 세미나를 열었다.

광장 김태주 변호사가 '김영란법,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공직자의 적용 범위, 부정 청탁의 유형과 예외 사유, 금품수수의 금지 내용 등 과 이에 대해 가능한 제재안 및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김영란법의 입안 과정부터 참여한 광장 장영섭 변호사는 "광장은 지난해부터 김영란법 대응 전담팀을 구성해 다양한 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유형에 대한 해석 및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에 대한 자문을 수행해왔다"며 "앞으로도 김영란법 시행과 관련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예방 시스템도 갖출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8/24/2016082403925.html?OutUrl=naver>

### 3. 2016 대한민국 윤리경영 대상 시상

2016 대한민국 윤리경영 대상 시상식이 30일 서울 흥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오는 9월 28일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해당 기관과 기업들의 윤리의식이 어느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남동발전(종합대상),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종합대상), 파나소닉 코리아(사회공헌부문), 한국시설안전공단(청렴경영부문), 주식회사 이레본(품질경영부문), (재)고양국제꽃박람회(청렴경영부문) 등 6개 기업과 기관이 각 부문의 수상자로 선정됐다.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163010>

## 독자 의견

본 뉴스레터와 관련된 건의 및 개선사항이 있으시다면, 메일(advisor@jcons.co.kr)로 의견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